
Policy and Law Report _Vol.147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08.01.~ 2022.08.07.) -

August 8, 2022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기획재정부	•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확정 기획재정부는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상정·의결함 「혁신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을 중심으로 기관별 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전체 공공기관(350개)을 대상으로 한 것임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기능) 민간경합·비핵심 기능 축소 등으로 핵심기능 중심 재편 - 민간경합, 지자체 수행이 바람직한 기능 → 축소 - 고유 목적사업 외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비핵심 기능→폐지 또는 축소 - 디지털 전환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감소 기능 → 축소 -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 → 통폐합 또는 조정 ② (조직·인력) 비대한 조직·인력 슬림화 및 '23년도 정원 감축 - 일정기간 정·현원차 지속시 초과 정원 감축 등 정·현원차 최소화 - 과도한 간부직 비율 축소, 大部셔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지원(기획, 인사, 경영평가)·파견인력 조정 등 - '23년도 공공기관 정원은 원칙적으로 감축 ③ (예산) 인건비·경상경비 절감 및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 개편 - 기관별 금년도 하반기 경상경비·업추비 예산의 10% 이상 절감 - 임·직원 보수를 엄격하게 검토하고, 인건비 소요는 초과근무 관리, 수당 통·폐합 등으로 효율화 * (임원) 경제상황, 기관 재무실적, 보수수준 등을 감안하여 검토·조정 (10월) (직원) 기관별 임금수준, 공무원 보수 등을 감안하여 적정수준 조정 (12월) -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한 직무급 도입 등 보수체계 개편을 통해 기존 호봉제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생산성·공정성을 제고 ④ (자산)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및 부실 출자회사 지분 정비 -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거나, 과도한 복리후생 용도, 유헴자산 등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 고유·핵심업무와 무관하거나 투자손실 확대 등으로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경우, 출자회사 지분 정비 - 업무시설별 기준면적 초과시 초과면적 축소, 유헴공간 매각·임대, 청사·지사의 활용도 제고 방안 강구	2022-07-29

부처	내용	일시			
	⑤ (복리후생) 국민 눈높이에 비해 과도한 복리후생 점검·정비 - 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항,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 지원 수준 등을 감안하여 복리후생 항목 점검·조정 -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기관별 복리후생 운영현황을 자체 점검 → 외부점검 단 확인 → 점검결과 공시 및 평가 반영				
금융위원회	• (금융규제혁신)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간담회 개최 -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및 신뢰확보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는 업계 및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금융분야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및 신뢰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함 초연결 네트워크와 초융합·빅블러 현상 속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고도화가 필수적임을 언급하면서, 성공적인「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해서는 금융규제를 혁신하여 금융권이 빅데이터와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가명정보 재사용을 허용하는「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구축 ② 「5大 금융분야별 AI 개발·활용 안내서」발간 ③ 가명정보 등을 활용하는 AI 개발·테스트 서버에 대해 망분리 예외 허용 ④ 테스트용 데이터 및 컴퓨팅 자원 지원을 위한「AI 테스트베드」구축 ⑤ AI 기반 신용평가모형 및 AI 보안성 검증체계 구축 ※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및 신뢰 확보 방안 주요내용 <table border="1"> <tr> <td> •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 금융권 협업을 통한 데이터 공동확보 • 데이터 전문기관 추가지정 양질의 빅데이터 확보 지원 </td><td> • 금융 AI 개발·활용 안내서 발간 • 설명가능한 AI 요건 마련 • 망분리 및 클라우드 규제 개선 AI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립 </td><td> • 금융 AI 테스트베드 구축 • AI 기반 신용평가모형 검증체계 마련 • AI 보안성 검증체계 구축 • AI를 활용한 효율적 감독 체계 구축 신뢰받는 AI 활용 환경 구축 </td></tr> </table>	•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 금융권 협업을 통한 데이터 공동확보 • 데이터 전문기관 추가지정 양질의 빅데이터 확보 지원	• 금융 AI 개발·활용 안내서 발간 • 설명가능한 AI 요건 마련 • 망분리 및 클라우드 규제 개선 AI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립	• 금융 AI 테스트베드 구축 • AI 기반 신용평가모형 검증체계 마련 • AI 보안성 검증체계 구축 • AI를 활용한 효율적 감독 체계 구축 신뢰받는 AI 활용 환경 구축	2022-08-04
•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 금융권 협업을 통한 데이터 공동확보 • 데이터 전문기관 추가지정 양질의 빅데이터 확보 지원	• 금융 AI 개발·활용 안내서 발간 • 설명가능한 AI 요건 마련 • 망분리 및 클라우드 규제 개선 AI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립	• 금융 AI 테스트베드 구축 • AI 기반 신용평가모형 검증체계 마련 • AI 보안성 검증체계 구축 • AI를 활용한 효율적 감독 체계 구축 신뢰받는 AI 활용 환경 구축			

부처	내용	일시
	[1] 양질의 빅데이터 확보 지원 ①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 현재는 가명정보를 이용목적 달성 후 파기해야 함에 따라 대량의 가명정보 데이터 셋 구축·운영 곤란 ⇒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데이터 결합 후 데이터 재사용을 허용 하는「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② 협업을 통한 데이터 공동 확보 ○ AI 개발에 대량의 비정형·전문데이터가 필요하나, 데이터 확보 비용 등으로 AI 개발·활용에 애로 ⇒ 협회, 금융분야 데이터 인프라 기관 등을 중심으로 협업을 통해 금융권이 공동 사용 가능한 AI 빅데이터 구축 ③ 데이터 전문기관 추가 지정 ○ AI 개발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결합 활성화 환경·인프라 구축 필요 ⇒ 데이터 결합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신뢰성, 전문성, 개방성 등을 갖춘 데이터 전문기관 추가 지정 [2] AI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립 ① AI 개발·활용 안내서 발간 ○ '21.7월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이 마련되었으나, 실제 AI 서비스 도입시 참고 가능한 기능·서비스별 안내서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 제기 ⇒ 신용평가·여신심사, 로보어드바이저, 챗봇, 맞춤형 추천, 이상거래탐지(FDS)등 5대 서비스별 「AI 개발·활용 안내서」 마련 ② 설명가능한 AI 요건 마련 ○ AI를 통한 의사결정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국내외에서 설명가능한 AI(XAI) 관련 논의 활발 ⇒ 연구용역 등을 통해 금융분야 관련 설명가능한 AI(XAI) 정의 및 요건, 구현사례(신용평가분야 XAI 모범사례 등) 등 안내서 발간 ③ 망분리 및 클라우드 규제 개선 ○ 원활한 AI 개발·활용을 위해서는 외부 API 및 클라우드 활용 필요 ⇒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개발·테스트 서버에 대해서는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물리적 망분리 예외 허용 추진 [3] 신뢰받는 AI 활용 환경 구축 ① 금융 AI 테스트베드 구축 ○ 금융 AI의 정확성 및 신뢰성 등 확인을 위해서는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검증하는 과정이 중요 ⇒ 금융분야 인프라 기관*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분야 AI 테스트가 가능한 검증 데이터 셋 및 테스트 환경 구축 * 신용평가(신정원), 금융사기방지(금결원), 금융보안(금보원)	

부처	내용	일시				
	<table><tr><td>② AI 기반 신용평가모형 검증체계 마련</td><td>○ 금융회사와 핀테크·플랫폼 업체들의 다양한 비금융정보와 AI 방법론을 활용한 신용평가모형 개발·운용 시도 확대 ⇒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를 통해 AI 기반 신용평가 검증체계 마련·운영</td></tr><tr><td>③ AI 보안성 검증체계 구축</td><td>○ AI 활용시 개인정보 유출, 알고리즘 오작동 등 다양한 보안 위험요소 상존 ⇒ 금융회사의 자체검증, 금보원 검증 지원 등 「AI 보안성 검증체계」 구축·운영</td></tr></table>	② AI 기반 신용평가모형 검증체계 마련	○ 금융회사와 핀테크·플랫폼 업체들의 다양한 비금융정보와 AI 방법론을 활용한 신용평가모형 개발·운용 시도 확대 ⇒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를 통해 AI 기반 신용평가 검증체계 마련·운영	③ AI 보안성 검증체계 구축	○ AI 활용시 개인정보 유출, 알고리즘 오작동 등 다양한 보안 위험요소 상존 ⇒ 금융회사의 자체검증, 금보원 검증 지원 등 「 AI 보안성 검증체계 」 구축·운영	
② AI 기반 신용평가모형 검증체계 마련	○ 금융회사와 핀테크·플랫폼 업체들의 다양한 비금융정보와 AI 방법론을 활용한 신용평가모형 개발·운용 시도 확대 ⇒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를 통해 AI 기반 신용평가 검증체계 마련·운영					
③ AI 보안성 검증체계 구축	○ AI 활용시 개인정보 유출, 알고리즘 오작동 등 다양한 보안 위험요소 상존 ⇒ 금융회사의 자체검증, 금보원 검증 지원 등 「 AI 보안성 검증체계 」 구축·운영					
국회입법 조사처	•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발간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국정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는 정책이슈를 엄선하고 현황과 개선방안을 함께 수록한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함 보고서에는 제1부의 ‘2022 국정감사 정책자료’와 제2부의 ‘2021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를 구분하여 총 632건의 이슈를 수록하였고, 상임위원회별 편제에 따라 분권하여 배부될 예정임 정책자료는 2022년 국정감사에서 주목해야 할 607건의 주요현안을 발굴하여 분석한 것이고,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는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 25건을 심층 평가한 것으로 국정감사 주요 이슈들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대상 부처별로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9권에 나누어 제공함 - 정치행정 분야: 1권(운영위·법사위), 2권(외통위·국방위), 3권(행안위) - 경제산업 분야: 4권(정무위·기재위), 5권(산자위·농해수위), 6권(국토위) - 사회문화 분야: 7권(교육위·문체위), 8권(과방위·환노위), 9권(복지위·여가위)	2022-08-02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기획재정부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2022.8.2. 시행) 내국법인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비과세 요건인 주택의 기준시가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되,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양도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여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함으로써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2022-08-02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2022.8.2. 시행) 현재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임대개시일을 기준으로 1주택자이고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거주기간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 상생임대차계약: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 앞으로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임대개시일 당시 다주택자이거나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넘는 경우라도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는 상생임대차계약의 체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전월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상생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의3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까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	2022-08-02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산업통상 자원부	• 「<u>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u>」 (2022.8.4. 시행)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첨단기술과 그 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이 무분별하게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위원회를 두고,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국가첨단전략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없이 해외에 수출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법률 제18813호, 2022. 2. 3. 공포, 8. 4. 시행)됨 이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육성·보호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절차 (제2조 및 제3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지침에 따라 부문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의 육성·보호에 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공고하도록 함 ②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등의 구성·운영 (제7조 및 제9조) -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도록 함 -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차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회의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등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도록 하며,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도록 함	2022-08-03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③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절차 (제14조 및 제16조) -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을 받으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업, 연구기관, 사업 자단체 등은 지정받으려는 기술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 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 등은 기술 환 경의 변화로 기존의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변경하거나 해제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나 지 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④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제26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의 집적 및 경쟁력 강화 효과가 있고, 국 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한 지역을 국가첨단전략 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화단지 지정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기업 및 사업자단체는 지정신청서에 특화단지 육성계획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 화단지 지정신청을 받으면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 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 록 함 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지정 절차 및 지원 (제45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학· 대학원 등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및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에 국가첨 단전략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8.4. 시행)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 또는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 기 위하여 안전확인이 필요한 어린이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의 효력을 상실하는 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 용으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819호, 2022. 2. 3. 공포, 8. 4. 시행)됨 이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기준을 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품명·제조업 자명·처분의 내용 및 사유를 공고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안전인증기관, 해당 제조업자 또 는 수입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022-08-03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보건 복지부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8.2. 시행) 처방전을 직접 수령하기 어려운 환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에 ‘장애인 거주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확대 등을 위한 지원 업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의료기관이 환자의 권리 등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 부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022-08-02
국토 교통부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8.4. 시행)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거나 해체신고를 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 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824호, 2022. 2. 3. 공포, 8. 4. 시행) 됨 이에 따라, 건축물 해체허가나 해체신고에 대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항과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하는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 해체공사감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해체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조정 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건축물 해체허가 등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항 (제21조의2 신설) -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관리자가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거나 해체신고를 한 사항 중 ‘해체공법’, ‘해체장비의 종류’ 및 ‘해체공사 현 장의 안전관리대책’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 를 하도록 함 - 건축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관리자가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한 사항 중 ‘착공 예정일’, ‘해체작업자’, 및 ‘해체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건 설기술자’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②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권자의 현장점검 사항 (제21조의3 신설) -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 권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와 ‘해체공사감리자 및 해체작업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등에는 현장점검을 하도록 함	2022-08-02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③ 감리원 배치기준 합리화 (제23조의2제1호나목 단서 신설) - 현행 규정상 해체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이면 감리원을 2명 이상 배치해야 하는바,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이라도 해체할 부분이 건축물의 일부분으로 국한되는 등의 경우에는 감리원을 2명 이상 배치할 필요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2명 이상 배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 앞으로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이라도 허가권자가 해체공사의 난이도와 해체할 부분 등을 고려할 때 감리원을 2명 이상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명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감리원 배치기준을 조정함 ④ 건축물 해체공사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등 (제23조의3 신설) -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및 감리원 등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고시된 교육기관 중 안전관리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전문교육기관, ‘국토안전관리원’ 및 ‘기술사회’ 등의 기관·단체 중에서 건축물 해체공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 해체공사 교육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교육기관의 명칭·대표자 및 소재지 등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⑤ 필수확인점의 세부 기준 (제23조의4 신설) -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해야 하는 필수확인점을 건축물 해체공사의 공정(工程) 중 ‘마감재 해체공정 착수 전’,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 및 ‘지하층 해체공정 착수 전’ 등으로 정함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2.8.4. 시행) 재건축초과이익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재건축부담금 부과에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대시설·복리시설을 소유한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으로 건축된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가격을 산정하여 그 총액을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가격 총액에 합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833호, 2022. 2. 3. 공포, 8. 4. 시행)됨 이에 따라, 주택의 가격 총액에 합산하는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가격 총액은 재건축부담금 부과 개시시점의 부대시설·복리시설에 대한 감정평가 가격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해당 금액을 재건축부담금 부과 종료시점의 주택 공시가격과 그 시점의 실거래가격과의 비율을 적용하여 조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022-08-02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기획재정부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행자 편의 제고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민소득 증가 등을 감안하여 여행자 휴대품·별송품의 면세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따라 입국장 면세점과 입국장 인도장 인도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한도를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관세 면제 대상이 되는 장애인용 운동용품 관련 표현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줄여나가기 위해 차별적 언어를 바로잡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와 별도면세범위 확대 (안 제48조제2항·제3항) -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대한 기본면세범위를 현행 미화 600달러 이하에서 미화 800달러 이하로 확대하고, 별도면세범위 중 술에 대한 면세한도를 현행 1병, 1리터(L)에서 합계 2병, 2리터(L)로 확대 ② 입국장 면세점 판매한도 확대 (안 제69조의4제1항·제3항) -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확대에 따라 보세판매장 운영인이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한도와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는 한도를 확대함 ③ 장애인용 운동용품에 대한 표현 명확화 (안 별표 2) - 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등에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추가함 ④ 장애인 차별적 용어 순화 (안 별표 2) - 법령 용어 중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개정함 ※ 의견 제시기간 : 8/5(금)~8/19(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로 제출	2022-08-05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과학 기술정보 통신부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법」이 개정(제18866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기술중립서비스 신고 수리 기준 (안 제13조의5 신설) - 제공하려는 기술중립서비스가 기술발전 방향 및 방송서비스 품질 향상에 부합할 것 - 기술중립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 의견 제시기간 :8/5(금)~9/15(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뉴미디어정책과)로 제출	2022-08-05
고용 노동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대한 노사정 합의사항('20.10.16.)을 반영하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직접·비밀·무기명 투표) 등을 규정한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22.12.11)될 예정임 이에, 개정된 법률에 부합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상 근거가 없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근로자위원 선출근거 법률 상향으로 실효된 조문 삭제 (현행 영 제3조제1항 삭제) -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된 근로자위원 직접선출 방법 및 위원선거인에 의한 간접선출 규정을 삭제하여 개정 법률에 부합하도록 정비 ② 근로자위원 입후보 시 추천 요건 삭제 (현행 제3조제2항) - 법률상 근거 없이 근로자위원 피선거권을 제한한 근로자위원 입후보 시 10명 이상 추천 요건을 삭제하여 규제를 개선 ※ 의견 제시기간 :8/1(월)~9/13(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로 제출	2022-08-01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특허청	•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술 패권 시대에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여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에 대한 신속한 권리화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및 빠른 글로벌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반도체 등 첨단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안 제9조제1항제13호 신설) ※ 의견 제시기간 : 8/3(수)~9/13(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특허청(특허제도과)로 제출	2022-08-03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그런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중 하나인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의 근거가 되는 대출자의 소득, 담보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여 실제로 적용되었어야 할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은행이 금리를 조정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은행법」 또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대출의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에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 소득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분쟁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23조제1항)	2022-08-02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최근 한 보험회사가 대주주와 전산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용역수행완료가 계약상 이행기한보다 지연되었고, 이로 인하여 ‘지체상금’이 발생하였지만 보험회사는 이를 청구하지 아니한 사례가 있었음 해당 사안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지체상금의 미청구’를 ‘자산의 무상 양도’로 볼 수 없어 현행법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함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할 경우 공적인 성격이 강한 보험회사의 자금을 계열회사에 지원하는 등 사적인 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보험회사가 대주주와의 용역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대주주 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보험업의 재정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 (안 제111조제1항제3호 신설 등)	2022-08-02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등 10인)」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원사업자가 제3자인 특정 사업자로부터 물품 등을 사게 하는 등의 ‘전속거래 구속행위’를 통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행위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러한 관행이 불공정행위의 원인이 되고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사업자가 제3자인 특정 사업자를 지정하여 그로부터 물품 등을 사게 하거나 특정 사업자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거래관행의 정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12조 후단 신설)	2022-08-04
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의원 등 11인)」 현재 전기통신사업자가 해지된 전기통신번호를 새로운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해지 후 28일이 경과한 후에 해당 번호를 부여하고 있음 하지만 전기통신사업자가 사용 이력이 있는 번호를 부여할 때, 별도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새로운 이용자에게 이전 이용자 명의의 통화나 문자메시지가 수신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현행 법령에 전기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새로운 가입자가 대부분 어린 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용 이력이 있는 번호를 새로운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좀 더 세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해지된 전기통신번호를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전기통신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고, 해지된 전기통신번호를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한 후 전기통신번호를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2조의10 신설 등)	2022-08-01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등 11인)」 최근 급격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내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을 비롯한 국내 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요청되는 상황에서 현행법에 따른 소유 제한 규제로 인해 자본력을 갖춘 기업의 투자위축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이 저해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개정 논의가 활발한 상황임	2022-08-03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현행 민영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소유규제는 당초 도입취지와는 달리 시장축소형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는 바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에 따라 방송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된 대기업 등이 방송사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최다액출자자가 방송사의 보도, 프로그램 제작·편성에 부당하게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에 대한 최다액출자자의 사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기마다 방송사업자는 해당 방송사업자가 송출한 방송 중 최다액출자자와 관련된 방송의 프로그램 명칭, 송출 횟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공표하도록 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98조의3 신설 등)	
문화체육 관광 위원회	• 「<u>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2인)</u>」 현행법은 게임물의 등급을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하여금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이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소(PC방)에서 부모 또는 형제 등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해당 계정을 통하여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물을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적발시 이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과 처벌은 PC방 영업자에게 처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게임물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게임물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을 제공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경영하는 자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물 이용 등급구분 준수 안내문 부착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물 이용 문화를 조성하고 주의 의무를 다한 PC방 영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28조제5호의2 및 제35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등)	2022-08-02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의원 등 35인)」 반도체 협력 또는 경쟁 국가로서의 미국, 중국,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차원의 대규모 집중 투자와 파격적인 인재양성 정책을 지원하고 있어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임 미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에 약 68조원(52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지원법을 준비하고 있고, 중국은 ‘반도체 굴기 2025’를 발표하면서 약 200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투자하고 반도체 기업에게 최대 10년간 소득세를 면제할 예정이며, 대만도 매년 1만여명 규모의 신규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하여 학사 정원의 10퍼센트와 석·박사 정원의 15퍼센트를 확대하는 등 반도체 관련 주요국들은 파격적인 반도체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임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은 국가·경제 안보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첨단전략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과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임 2022년 8월 4일에 시행되는 현행법은 경쟁국들의 파격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관련 산업계 등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기술보유자에 대한 지원,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인·허가 등의 신속처리, 전략산업등의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에 전략기술보유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안 제9조제1항제10호 신설) ②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을 위하여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제2항) ③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안 제16조제3항제2호 신설) ④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을 위하여 인·허가권자는 인·허가의 처리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허가 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연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9조제4항)	2022-08-04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⑤ 수도 및 전기 등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설치할 필요가 있는 기반시설에 관하여 예비 타당성조사 또는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조항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공공기관의 사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7조제1항 및 제3항) ⑥ 전략기술보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전략산업 등의 설비구축 및 연구·개발 투자와 관련된 인·허가,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8조의2 신설) ⑦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인력양성사업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함 (안 제35조제1항제4호 신설) ⑧ 전략산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등을 임용할 경우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안 제37조의2 신설) ⑨ 전략산업 등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7조의3 신설)	
보건복지 위원회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등 12인)」 현행법령에 따르면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의 생산을 중단할 경우 그 사유 및 일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보고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해당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건강보험수가 조정, 규제 완화 또는 지원 확대 등의 대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이가 필수적인 경우가 많으나,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이에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를 생산 또는 수입하는 업체가 중단 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법으로 상향 입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생산 중단 계획을 통보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학회나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받도록 하며, 필요한 조치사항의 검토를 위하여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조업자의 의료기기 생산·수입중단 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3조제5항 및 안 제31조의6 신설 등)	2022-08-01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코로나19를 계기로 의료기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되었으며, 감염병 극복 및 방역에 일조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기 수요가 급증하는 등 의료기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크게 높아짐 의료기기는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품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는 이에 기여하는 의료기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의료기기 분야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산업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관련 업체와 국민에게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의료기기산업의 정책적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세계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해 ‘의료기기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기기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안전 사용을 보장하고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의료기기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소비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각종 제도에 대해 홍보하고자 함 (안 제2조의2 신설)	2022-08-02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1인)」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 수입식품등을 판매하여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그가 판매한 해당 수입식품등의 판매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위해 수입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위해 수입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여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을 상향함으로써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 수단을 강화하고, 수입식품등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3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등)	2022-08-02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환경노동 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3인)」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사항과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대표이사에게는 현장의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의 책임 등이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현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의 현장 소장이나 공장장 등에게 사고의 책임 및 처벌이 전가되고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역할을 고려하면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에도 현행법에 명시적인 내용이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표이사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사항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여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책임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경우와 같이 법에 상향입법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직무에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사업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안 제 14조의2 등)	2022-07-29
국토교통 위원회	•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22인)」 현행법령에 따르면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그 수주활동 및 시공 상황(각종 사고포함)을 정기적으로 또는 계약체결·사고발생시 정한 기간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건설사의 경우 해외공사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지 않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의 보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1천5백만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이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외공사의 수주활동 등의 미통보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대로 300만원 이하로 하고, 사고를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통보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300만원에서 1천5백만원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해외공사 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안 제41조제1항 신설)	2022-08-04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상임위	아래 【별첨1】 참조		
국회도서관	8/11(목)	「현안, 외국에선?」 제41호 발간 - 일본의 아동행정 컨트롤타워가 될 어린이가정청의 출범	
예산정책처	주중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분석」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행정안전부) 추진 현황 및 사업의 합목적성, 효율성, 효과성 측면에서 주요 쟁점 분석·평가	
	주중	「2021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 2021회계연도 총수입 세목별 항목별 증감 원인 및 주요 이슈 등을 분석하여 국회 결산 심사 및 의정활동 지원	
	8/11(목)	「2022~2070년 NABO 장기 재정전망」 - 장기적인 인구구조의 변화, 잠재성장률 둔화 등에 따른 국가 재정의 장래 모습에 대한 전망	
	8/12(금)	「대한민국 경제」 발간 - 대한민국 경제를 생산계정, 소득계정, 자본계정, 금융계정 등 국민계정체계에 따라 분석하고 각 계정별 주요 경제지표, 경제정책, 경제현황 등을 소개	
입법조사처	8/8(월)	「이슈와 논점」 제1977호 발간 - 미·중 전략경쟁 시대, 한미동맹의 방향과 과제	
	8/9(화)	「NARS 입법영향분석」 제54호 발간 - 청렴계약제의 입법영향분석	
미래연구원	8/9(화)	「한중 미래대화」 개최 - 2050 미래 국제질서 전망과 한중관계의 미래	

[별첨1] 제398회 국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교육위	8/9(화) 10:00	전체회의	소위원회 구성의 건, 업무보고 등
행안위	8/8(월) 10:00	인사청문회	경찰청장 후보자 윤희근 인사청문회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8/8(월) 10:00	이른둥이 살리는 모유은행 설립과 지원 방안은?	신현영 의원실, 대한모유수유학회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8/9(화) 10:00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 -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안철수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8/9(화) 10:00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과 동물진료비 부담 완화 위한 반려 동물보험 활성화 정책토론회	허은아 의원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
8/9(화) 10:00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제도' 30년 이대로 괜찮은가? - 대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 해소의 올바른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	윤창현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8/9(화) 14:00	재사용전자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을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입법 공청회	이장섭 의원실, 국가기술표준원	의원회관 2세미나실
8/9(화) 19:00	김한규와 경제 읽기 - 정말 '그린플레이션'이 문제인가?	김한규 의원실	의원회관 2간담회실
8/10(수) 10:00	신(新)냉정체제 한반도와 한일관계 토론회	김한정 의원실, 국회 한반도평화포 럼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8/10(수) 14:00	독립운동사 연구 기반 강화 법률 제정 토론회	윤주경 의원실, 국가보훈처	의원회관 2소회의실
8/10(수) 14:00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 세미나 - 양극화해소 :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필모 의원실, 국회공정사회포럼	의원회관 3간담회실
8/10(수) 19:00	김기현과 함께하는 이순신의 위기극복 리더십!	김기현 의원실	영등포 롯데시네마
8/12(금) 14:00	안락사 허용보다 더 시급한 과제 "생애말기 돌봄 체계화"	신영현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제146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8/2(화) 12:00	<u>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u> - 대선과 지방선거 반성과 교훈	강준현·고영인·권인숙 의원실 등	의원회관 9간담회장
8/4(목) 10:00	<u>생활밀착형 유통소매업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개선 세미나</u> - 첫 번째 순서 ‘골목상권 편의점’	최승재 의원실, 전국편의점협의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
8/4(목) 14:00	<u>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적 상생방안은 무엇인가?</u>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이태규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8/5(금) 10:00	<u>우리 사회가 아동학대 대책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u>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조은희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 | |
|---|--------------------------------------|
| • 백대용 변호사 |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 • 박현주 (Hyunju Helen Pak) 외국변호사 |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 • 김성범 변호사 |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 • 홍정아 (Claudia Hong) 외국변호사 |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 • 방세희 변호사 |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 • 노지은 변호사 |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 • 나인선 변호사 | T. 02-316-1795 E. isna@shinkim.com |
| • 최유리 변호사 |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
| • 성재열 변호사 |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 • 조성환 변호사 |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 • 김은혜 변호사 | T. 02-316-1736 E. ehkim@shinkim.com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